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’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상위급 회의체로서, 국정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정책 조정·수립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,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명칭을 ‘국가정책조정회의’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회의체 기능 및 성격 명확화를 위해 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’를 ‘국가정책조정회의’로 변경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”을 “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”를 “국가정책조정회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”를 “국가정책조정회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</u>	<u>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<u>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</u> 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정책조정회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중앙행정 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<u>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</u> 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국가정책조정회의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